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앞 쪽)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출자지분 등 변경 명세

④ 출자일 (투자일)	⑤ 조합명 (우탁회사·벤처기업명 · 투자신탁명)	⑥ 출자 금액 (투자금액)	⑦ 이전·화수 (양도·환매) 금액	⑧ 출자 잔액 (투자잔액) (⑥ - ⑦)	⑨ 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⑩ 원천징수 여부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 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투자조합관리자 등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작성방법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이전·회수(양도·환매)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times \frac{\text{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text{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2)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times \frac{\text{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text{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금액

3. "⑩ 원천징수 여부"란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였을 경우 "여", 해당없을 경우 "부"로 적습니다